

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(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)

장치명	제한되는 작업 범위
1. 원동기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엔진 교환,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·부착(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·부착은 제외한다) ○ 디젤분사펌프(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)의 탈·부착, 정비
2. 연료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·부착, 정비
3. 조향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향기어의 탈·부착(변속기, 크로스멤버 등 조향기어 주변의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조향기어 고정볼트를 풀고 조이는 것은 제외한다) ○ 조향기어의 정비
4. 제동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·부착, 정비 ○ 브레이크 챔버 탈·부착, 정비 ○ 분리식 배력장치 탈·부착, 정비(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)
5. 완충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
6. 전기·전자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조등 탈·부착, 정비(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·부착은 제외한다)
7. 기타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체,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·용접·도장

주: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.